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11. 2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11.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12. 16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 연장 및 축소·폐지 등의 조문을 정리하여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 나.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50% 과세(안 제5조)
- 다.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변경(안 제6조)
- 라. 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안 제9조)
- 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11조)
- 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규 명칭 변경(안 제12조 제3항)
- 사.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중 감면범위 축소(안 제13조)
- 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으로 축소(안 제14조)
- 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전문 개정(안 제23조)
- 차.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문 개정(안 제25조)
- 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50% 과세로 전환(안 제2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상위법령에 의거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 및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축소 조정하고, 노인복지시설중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 그리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상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 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전문개정(안 제23조)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 전문개정안(안 제25조)에 대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되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농업기반공사의 농어촌 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이용에 관한 사업장에 대하여 면제하던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개정조례안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 답 :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적용시한)에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음.

○ 문 : 개정조례안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과 관련, 우리군 관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 답 :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없음.

○ 문 : 우리군 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이 있는지?

● 답 : 현재, 없음.

○ 문 : 개정조례안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중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인가?

● 답 : 예, 그렇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12.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